

#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최정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68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8년 11월 27일

발 의 자 : 최정순, 서운기, 문장길, 김춘례,  
유정희, 이광성, 김태수, 김기덕,  
송명화, 김정환, 김생환, 김제리  
의원(12명)

## 1. 제안 이유

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선도적 전환 및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정책개발 및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에너지 정책위원회 위원 수를 조정하고 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위원회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## 2. 주요 골자

가.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 수를 50명으로 함(안 제12조제2항)

나. 실행위원회를 대체하여 에너지정책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  
(안 제12조제5항)

### 3. 참고 사항

가. 관련 법령

나. 예산 조치 :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

다. 기 타 :

1)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30명”을 “50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민관 협력 하에 사업을 실행하고 평가하기 위한 실행위원회”를 “위원회에 분과위원회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시민단체·종교계·경제계·학계·교육계·언론계 등 각 사회계층에서 명망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,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2명으로 한다.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 <p>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<u>민관 협력하에 사업을 실행하고 평가하기 위한 실행위원회를</u>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⑥ (생략)</p>	<p>제12조(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50명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</p> <p>----- <u>위원회에 분과위원회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